

운영규정 개요

기관명	강남가정요양원4	설치일자	2022.05.01
급여종류	노인공동생활가정	정원	9
대표자	김민철	시설규모	지상4층 / 206m2(62.315평)
주 소	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290, 4층		
비급여	식사재료비	3,800 원 (1식)	
	간식비	1,400 원 (1식)	
입소대상자	[노인장기요양보험법]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		
인력기준	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		

시설급여	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 한다.
의료서비스	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특별보호	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.
배상책임	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 한다. 다만,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센터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.

입소계약	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
계약기간	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계약해지	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
보호자 권리 및 의무	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시설사용주의	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,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,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.